

신·구 조문 대비표

□ 소송업무규정(안)

현 행	개정안	비고
<p>제 45 조 (계속위임보수)</p> <p>①원심 위임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 상급심의 보수도 원심 보수와 같다. 다만, 소송물가액이 증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1/2 이하로 한다.</p>	<p><u>제 45 조 (파기환송사건 등의 착수금)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파기환송·재심·재소사건을 이전 사건 수입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/2로 한다.</u></p>	<p>o (제1항 : 상소심의 계속위임보수)</p> <p>-2015.9.24 개정 전 상소시 동일변호사에 대한 위임보수는 감액할 수 있었으나, 개정 후 원심과 상소심의 보수가 동일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위임보수를 규정하는 제44조와 중복적인 규정이므로 삭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소송업무규정제 44 조 (위임보수)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보수는 ... 「민사소송등인지규칙」에서 정한 소송물가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수입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·지급한다. 다만, 소가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한다.</p> </div> <p>o (제2항 : 파기환송·재심·재소사건의 위임보수)</p> <p>-재심·재소 사건 등을 이전 사건 수행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, 일손이 덜 드는 점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감액하는 규정임.</p> <p>-현행 규정은 ‘원심’ 착수금의 1/2 이하로 되어 있어서 착수금 조항(별표1)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 전 원심 착수금의 1/2 이하를 지급해야 함</p> <p>-이 조항은 ‘위임시’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1/2로 감액하려는 취지이므로 ‘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/2’로 개정함이 타당</p> <p>-파기환송 사건도 같은 내용으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에 추가할 필요성 있음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〈별표 1(제44조 제1항 관련)〉 변호사보수 산정기준</p> <p>1. 본안사건의 착수금 가. 민사 및 행정사건 .민사 및 행정사건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. (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함) 다만, 당해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〈별표 1(제44조 제1항 관련)〉 변호사보수 산정기준</p> <p>1. 본안사건의 착수금 가. 민사 및 행정사건 .민사 및 행정사건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. (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함) 다만, 당해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소송물가액</th> <th>산정기준</th> <th>지급기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,000만원 이하</td> <td></td> <td>1,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</td> <td>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</td> <td>1,300,000 ~ 1,5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</td> <td>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</td> <td>1,550,000 ~ 1,9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</td> <td>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</td> <td>1,950,000 ~ 2,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 2억원 이하</td> <td>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</td> <td>2,400,000 ~ 3,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 <td>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</td> <td>3,400,000 ~ 4,9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td> <td>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</td> <td>4,900,000~ 16,1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0억원 초과</td> <td></td> <td>16,15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송물가액	산정기준	지급기준액	4,000만원 이하		1,300,000원	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	1,300,000 ~ 1,550,000원	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	1,550,000 ~ 1,950,000원	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	1,950,000 ~ 2,400,000원	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	2,400,000 ~ 3,400,000원	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	3,400,000 ~ 4,900,000원	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	4,900,000~ 16,150,000원	50억원 초과		16,150,000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소송물가액</th> <th>산정기준</th> <th>지급기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,000만원 이하</td> <td></td> <td>1,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</td> <td>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</td> <td>1,300,000 ~ 1,5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</td> <td>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</td> <td>1,550,000 ~ 1,9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</td> <td>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</td> <td>1,950,000 ~ 2,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 2억원 이하</td> <td>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</td> <td>2,400,000 ~ 3,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 <td>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</td> <td>3,400,000 ~ 4,9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td> <td>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</td> <td>4,900,000~ 16,1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0억원 초과</td> <td></td> <td>16,15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송물가액	산정기준	지급기준액	4,000만원 이하		1,300,000원	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	1,300,000 ~ 1,550,000원	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	1,550,000 ~ 1,950,000원	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	1,950,000 ~ 2,400,000원	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	2,400,000 ~ 3,400,000원	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	3,400,000 ~ 4,900,000원	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	4,900,000~ 16,150,000원	50억원 초과		16,150,000원	
소송물가액	산정기준	지급기준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이하		1,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	1,300,000 ~ 1,5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	1,550,000 ~ 1,9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	1,950,000 ~ 2,4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	2,400,000 ~ 3,4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	3,400,000 ~ 4,9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	4,900,000~ 16,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억원 초과		16,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송물가액	산정기준	지급기준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이하		1,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(130만원 + (소송물가액-4,000만원)×5/100×1/2)	1,300,000 ~ 1,5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,0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(155만원 + (소송물가액-5,000만원)×4/100×1/2)	1,550,000 ~ 1,9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(195만원 + (소송물가액-7,000만원)×3/100×1/2)	1,950,000 ~ 2,4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(240만원 + (소송물가액-1억원)×2/100×1/2)	2,400,000 ~ 3,4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(340만원 + (소송물가액-2억원)×1/100×1/2)	3,400,000 ~ 4,9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(490만원 + (소송물가액-5억원)×0.5/100×1/2)	4,900,000~ 16,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억원 초과		16,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※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.</p> <p>나. 기타 소송사건 .형사사건 기타 특수소송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다. 상급심의 착수금 .제2심 및 제3심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제1심의 지급기준과 같다. .파기환송심의 경우 원심착수금의 1/2로 지급한다.</p> <p>라. 소송물 가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※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.</p> <p>나. 기타 소송사건 .형사사건 기타 특수소송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다. 파기환송·재심·재소 사건 .가항의 착수금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/2로 지급한다.</p> <p>라. 소송물 가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o (다항) -현행 규정은 ‘원심’ 착수금의 1/2 이하로 되어 있어서 착수금 산정기준(별표1 가항)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 전 원심 착수금의 1/2 이하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-이 조항은 ‘위임시’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1/2로 감액하려는 취지이므로 ‘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/2로 개정함’이 타당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정안	비고
<p>〈별지 제3호서식(제18조제2항 관련)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 송 위 임 계 약 서</u></p> <p>(생략)</p> <p>제 1 조 (생략)</p> <p>제 2 조 “위임인”은 “수임인”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_____ 원을 지급한다.</p> <p>제 3 조 (생략)</p> <p>제 4 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“위임인”은 “수임인”에게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승소(50% 이상)일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</p> <p>제 5 조 ~ 제 10 조 (생략)</p> <p>제 11 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위임인”의 소송업무규정에 의한다.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위임인”과 “수임인”은 각 1통씩 보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>“위임인”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○○○ (인)</p> <p>“수임인” 주소 : 변호사(법무법인) ○○○ (인)</p>	<p>〈별지 제3호서식(제18조제2항 관련)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 송 위 임 계 약 서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“위임인”은 “수임인”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_____ 원을 지급한다. (소송물 가액이 변경된 경우 위임인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변경하되,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임인의 청구로 같음한다.)</p> <p>제 3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4 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“위임인”은 “수임인”에게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승소(50% 이상)일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(변론이나 심문기일 없는 가압류, 가처분 사건 제외)</p> <p>제 5 조 ~ 제 10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1 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위임인”의 소송업무규정에 의한다.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위임인”과 “수임인”은 각 1통씩 보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>“위임인”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○○○ (인)</p> <p>“수임인” 주소 : 변호사(법무법인) ○○○ (인)</p>	<p>o(제2조 제2문 신설)</p> <p>-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변호사에 줄 착수금도 변경됨</p> <p>-그러나 소송기술상 청구취지 변경은 빈번히 일어나므로, 매번 이에 따라 착수금을 변경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종료후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하는 현실을 반영함</p> <p>-최근 소송 상대방이 시의원 등에게 민원을 넣어 이를 문제 삼은 바 있어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에 반영</p> <p>o제4조</p> <p>-현행 소송업무규정 별표1 3의 가항 내용을 소송위임계약서에 반영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소송업무규정 별표 1 3. 각종 신청사건 가.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사건 ·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은 착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. ·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거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</p> </div>